

취약시기(을지연습) 복무점검 결과보고

-통합 및 복수관리 지사 관리자 근태 점검 병행-

- 감사기간: 2015. 8. 17.(월)~2015. 8. 20.(목) / 4일간
- 감사인원: 11명
- 지적사항: 통보 3건

2015. 9.

목 차

I. 감사실시 개요	1
1. 감사목적	1
2. 감사대상	1
3. 감사기간 및 인원	1
4. 감사중점 사항	2
II. 감사결과	3
1. 총평	3
2. 주요 실적	4
3. 분야별 지적사항	4
4. 감사자 의견	5
5. 행정사항	6
III. 처분요구 현황	7
붙임명세	7
【붙임 1】 점검대상기관 현황	8
【붙임 2】 감사결과 처분요구	10

I. 감사실시 개요

1. 감사목적

2015년도 을지연습기간 중 비상소집 응소상황 점검과 임직원의 복무점검 등을 통하여 국가 위기관리 대처능력 기여와 공직복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

2. 감사대상

- 대상기관: □□, ○○○, △△△ 및 ◎◎지역본부 등 8개 본부와 16개 지사
 【붙임 1】 점검대상 기관 현황 1부.

3. 감사기간 및 인원

- 기 간: 2015. 8. 17.(월) ~ 2015. 8. 20.(목) 4일간
- 인 원: 9개 반 11명
 - 8. 17. 9개 반 11명이 을지연습 응소현황 등 점검(감사1반: 8. 17.~ 8. 20.)
 - 8. 18. ~ 8. 20. 3개 반 3인이 복무점검 실시(11명 중 3명)

감사반	감사인	점검기관	감사일수	감사기관	비고
9개 반	11명		4일	27개 기관	
1반	감사 [△] 부장 ◎◎◎ 팀 장 ◇◇◇ 팀 장 ◇◇◇	□ □ (전 부서)	1	1	
2반	차 장 ◆◆◆	▨▨▨▨▨ (▨▨▨지사, ▨▨▨지사) ▩▩▩▩▩ (▩▩▩▩▩지사, ▲▲지사) ■ ■ ■ ■ (본부, ■ ■ ■ ■ 지사)	4	6	감찰 병행
3반	차 장 ⊙⊙⊙	▨▨▨▨▨ 지역본부	1	1	
4반	차 장 ●●●	▣▣ 지역본부	1	1	
5반	차 장 ●○●○	△△△△△△△, ◎◎지역본부	1	2	

감사반	감사인	점검기관	감사일수	감사기관	비고
6반	팀 장 ○○○○	▣▣▣▣지역본부	1	1	
7반	팀 장 ○○○○	□□ □□ (본부, ▲▲지사, ▲▲지사) ▣▣▣▣ (□□지사, □□지사) ▣▣▣▣ (본부, □□, ⊖⊖⊖⊖지사)	4	7	
8반	팀 장 ○○○○	○○○○○○○○○ △ △ (⊖⊖⊖⊖지사, ⊖⊖⊖지사, ⊖⊖⊖지사, ⊖⊖⊖지사) ▣▣▣▣ (⊖⊖지사)	4	6	
9반	팀 장 ○○○○	⊖⊖⊖⊖지역본부	1	1	

4. 감사중점 사항

이번 감사는 “취약시기(을지연습) 복무점검 및 취약분야 기획점검”을 실시하였으며 다음 사항을 집중 점검함

○ 2015년도 을지연습 기간 중 이행 상황 점검 및 직무감찰

- 응소 순위별 비상소집 응소 현황 점검
- 상황실의 단계별 연습 진행 상황 점검
- 상황실 메시지 전달 및 회신 후 조치 상황 점검
- 민방위 대피훈련 동참여부 점검
- 비상연락망 체계 작성·비치 및 현실화 여부 점검
- 연습기간 중 근무지 무단 이석 및 이탈 등

○ 중점점검 사항

- 통합지사 및 복수관리 지사 관리자 근태 점검

○ 기타 사항

- 출·퇴근 시간 준수, 외출, 휴가 등 연습기간 중 기본 복무 점검
- 근무시간 내·외 음주운전 및 도박, 사행성 행위
- 근태리더기 운영 및 최종퇴실점검부 작성·관리 적정성 여부
- 서류류 관리 및 정보 보완 준수 등

II. 감사결과

1. 총평

□ 을지연습

○ 본사)

관련 직원의 임무 수행에 대한 사전 교육이 미흡하여 연습 초기 각각의 분야별 임무를 파악하지 못하여 혼선이 있었으며

○ 지역본부)

지역본부는 연습기간 중 연습 첫날 시간 내 응소는 양호하였으며 19일 민방공훈련 시 지하대피소에서 민방공 훈련 방송을 청취하는 등 적극적으로 동참하였으나 본사의 시달 미션에 대한 응소 이외에 본부 자체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았음

○ 지사)

연습 첫날 시간 내 응소는 잘 하였으나 19일 민방공훈련 참여는 서무 업무 직원과 지사장이 내근 중이었으며 민방공 훈련에 따른 대피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음

□ 통합·복수관리지사 관리자 근태 점검

- 통합¹⁾·복수관리지사²⁾ 관리자의 근태 현황을 점검한 결과 양호하게 근무하고 있었으며 일부 지사장은 인력 부족으로 GNSS측량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등 성실히 복무하고 있음

1) 통합지사: 2개 지사를 1개 지사로 통합하여 1명의 지사장이 운영하는 기관

2) 복수관리지사: 2개 지사를 1명의 지사장이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통합지사와 유사하나 지사 단위가 2개 지사로서 통합지사와 구분됨

2. 주요 실적

지적사항	종류	건수	비고
2015 을지연습 비상소집연습 지연 응소	확인서	1건	△△△△△△△
2015 을지연습 비상소집연습 지연 응소	확인서	1건	○○○○○○○○
측량용품 관리 소홀	확인서	1건	▨▨▨▨▨▨▨ 지역본부 ▨▨▨▨▨▨▨ 지사
총 계		3건	

* 그밖에 경미한 위규 사항은 정부정책 및 공사의 방침 설명 등 현지 구두 조치

3. 분야별 지적사항

- ○○○○실(본사)에서는 을지연습과 관련하여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발령 후 1시간 이내 응소하고, 일반직원은 비상소집 발령 후 2시간 이내 응소하도록 시달하였음³⁾
- 따라서 직원들은 을지연습에 참가하면서 근면성실한 자세로 임하고 비상소집 명령이 지시되었을 경우에 필수요원은 1시간 이내에 응소하고, 일반요원은 2시간 이내에 응소하여 응소표에 등록하여야 함
- 그런데 △△△△△△△의 직원 2명과 ○○○○○○○○의 직원 1명은 일반요원으로 2015. 8. 17. 오전 6시에 을지연습 비상소집이 발령된 이후 교통지체 상황 등의 사유로 을지연습 응소시각에 각각 5분 ~ 10분 지연하여 응소함

3) “2015년 을지연습대비 비상소집 응소자 현황 사전조사” ○○○○실-6838(2015. 7. 30.)와 “2015 을지연습 비상소집 발령 시 필수요원 조치사항 알림” ○○○○실-7131(2015. 8. 7.)

- 「재무규정」 제40조(자산관리의무) 제1항에는 “공사의 모든 자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공사의 수익증대와 이익 보존에 대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” 고 되어 있으며
- 「자산관리규칙」 제5조(관리책임자) 제3항에 “측량장비·전산장비와 저장품의 분임취급자는 본사와 지역본부는 각 담당부서장, ○○원은 ○○○○실장, ○○원은 ○○○○실장, 지사는 지사장으로 하고 취급원은 분임취급자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.” 고 되어 있고,
- 「같은 규칙」 제17조(관리 사용책임) 제2항에 “분임 취급자는 소관 물품의 출납·보관 등의 사무 처리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.” 고 되어 있음
- 그러나 일부 지사에서 공사 예산으로 구입하여 배부한 경계점표지 등의 측량용품을 지사 사옥 외부 계단 밑 창고에 보관하면서 별도 잠금 조치 없이 방치하였고, 이에 따라 경계점표지 등의 측량용품이 분실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음

4. 감사자 의견

- 이번 복무점검은 을지연습 기간 중에 직원들의 연습 참여정도와 복무 상태 점검에 중점을 두었으며 점검결과 을지연습은 추후 본사와 지역본부, 지사별로 체계적이며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부터는 좀 더 내실 있는 연습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
- 이번에 16개 지사를 점검하였으며 그중에 통합지사 총10개 지사 중 3개 지사, 복수관리지사 4개 지사 중 3개 지사를 점검하였고

그 외 지사는 예방 감사차원으로 추후 지속적인 점검을 할 예정이며

- 관련지사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(의견 청취 등)으로 제도적 미비점 (여비규정, 복무규칙 등)이나 부적합한 근무실태 발견 시에 관련제도 개선 및 직원에 대해서는 처분 요구하고자 함

5. 행정사항

- (감사결과 처분요구) ○○○○○○○○, △△△△△△△, ▣▣▣▣▣▣▣▣지역본부
- (감사결과 공시) 공공감사정보시스템, e-감사시스템, 홈페이지 공시

Ⅲ. 처분요구 현황

관 계 기 관	내 용	처분요구 등 종류			비고
		행정상	재정상	신분상	
○○○○○○○○○	2015 을지연습 비상소집연습 지연 응소	통보			
△△△△△△△	2015 을지연습 비상소집연습 지연 응소	통보			
▣▣▣▣▣▣▣▣ 지역본부	측량용품 관리 소홀	통보			

붙임명세

붙임 1. 점검대상 기관 현황 1부.

붙임 2. 감사결과 처분요구 2부.

【붙임 1】 점검대상기관 현황

○ 기간: 2015. 8. 17. ~ 2015. 8. 20.(4일간)

일자	점검 기관		정원	점검 시 인원	감사 반	비고
	□□, ○○○, △△△ 및 본부	지사				
계	11개	15개	918	703	9개 반	
8.17.(월)	□ □		269	231	1반	을지연습 응소점검
	○○○○○○○○		33	33	8반	
	△△△△△△△		56	50	5반	
	◎ ◎		29	26	5반	
	⌘ ⌘	⌘ ⌘	62	59	9반	
		⊖ ⊖ ⊖ ⊖	36	3	8반	
	▭ ▭	▭ ▭	34	33	7반	을지연습 응소점검
		▲ ▲	19	-	7반	감찰
	▣ ▣	▣ ▣	34	34	4반	을지연습 응소점검
	▨ ▨ ▨ ▨		36	35	3반	
	■ ■ ■ ■		39	39	2반	
		■ ■ ■ ■	9	8	2반	
▣ ▣ ▣ ▣		45	41	6반	을지연습 응소점검	
8.18.(화)	△ △	☯ ☯ ☯	10	8	8반	
		⊖ ⊖ ⊖	8	-	8반	
	▭ ▭	▲ ▲	9	6	7반	
	▣ ▣	▣ ▣ ▣ ▣	10	3	2반	감찰병행
	▣ ▣ ▣ ▣	▣ ▣	8	-	7반	감찰

일자	점검 기관		정원	점검 시 인원	감사 반	비고
	□□, ○○○, △△△ 및 본부	지사				
8.19.(수)	⌘ ⌘	⊛ ⊛	39	33	8반	민방위훈련 점검
	⌘ ⌘		29	16	7반	민방위훈련 점검
		□ □	19	13	7반	
		▲ ▲	10	5	2반	민방위훈련 점검
	▤ ▤ ▤ ▤	▨ ▨	12	5	2반	
▣ ▣ ▣ ▣	□ □	15	8	7반		
8.20.(목)	▤ ▤ ▤ ▤	▨ ▨	12	11	2반	
	⌘ ⌘	⊕ ⊕ ⊕ ⊕	17	-	7반	감찰
	▣ ▣ ▣ ▣	☯ ☯	19	3	8반	

【붙임 2】 감사결과 처분요구

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

통 보

제 목 2015 을지연습 비상소집훈련 지연 응소

관 계 기 관 ○○○○○○○○, △△△△△△△

내 용

○○○○○○○○과 △△△△△△△에서는 ○○○○실(본사)의 ‘2015 을지연습¹⁾ 유의사항’에 따라 2015. 8. 17. 오전 6시에 직원 비상소집을 발령하고 응소시간 내 응소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한 을지연습 비상훈련을 실시하였다.

「복무규정」 제2조에 따르면 직원은 업무운영상 기본이 되는 관련 규정을 지켜야 하고 근면성실한 근무자세로 맡은 바 직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.

그리고 ○○○○실(본사)에서는 위 연습과 관련하여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발령 후 1시간 이내 응소하고, 일반직원은 비상소집 발령 후 2시간 이내 응소하도록 시달하였다.²⁾

따라서 위 △△△의 직원들은 을지연습에 참가하면서 근면성실한 자세로 임하고 비상소집 명령이 지시되었을 경우에 필수요원은 1시간

1) 2015. 8. 17.부터 같은 해 8. 20.까지 4일간 실시함

2) “2015년 을지연습대비 비상소집 응소자 현황 사전조사” ○○○○실-6838(2015. 7. 30.)와 “2015 을지연습 비상소집 발령 시 필수요원 조치사항 알림” ○○○○실-7131(2015. 8. 7.)

이내에 응소하고, 일반요원은 2시간 이내에 응소하여 응소표에 등록하여야 했다.

[표] “2015 을지연습” 미응소자 현황

소속	직 · 성명	응소구분	응소시각	실제 응소시각	사 유
○○○○○○○○	국토정보직5급 ☼☼☼	일반요원	08:00	08:10	교통체증
△△△△△△△	◎◎◎◎◎ ❖❖❖	일반요원	08:00	08:05	교통지체
△△△△△△△	☆☆☆☆☆ □□□	일반요원	08:00	08:10	교통체증

그런데 [표]와 같이 위 직원 3명은 일반요원으로 2015. 8. 17. 오전 6시에 을지연습 비상소집이 발령된 이후 교통지체 상황 등의 사유로 을지연습 응소시각에 ○○○○○○○○ ★★★★★실 ☼☼☼는 10분, △△△△△△△ 실 ◎◎◎◎◎ ❖❖❖은 5분, ○○○○○○○○실 ☆☆☆☆☆ □□□은 10분을 각각 지연하여 응소하였다.

그 결과 위 3명은 유사시 위기대응태세를 확립하고 국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을지연습의 연습 목적을 상실하게 하였다.

조치할 사항 ○○○○○○○○장과 △△△△△△△장은 앞으로 을지연습 등 비상소집 연습에 지연 응소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관련 교육 등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.

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

통 보

제 목 측량용품 관리 소홀

관 계 기 관 〰〰〰〰지역본부 〰〰지사

내 용

〰〰〰〰〰〰지역본부 〰〰지사는 지적측량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□□ 및 지역본부에서 구입한 경계점표지 등의 측량용품을 배부 받아 자체 창고 등에 보관하고 있다.

「재무규정」 제40조(자산관리의무) 제1항에는 “공사의 모든 자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공사의 수익증대와 이익 보존에 대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” 고 되어 있다.

그리고 「자산관리규칙」 제5조(관리책임자) 제3항에 “측량장비·전산장비와 저장품의 분임취급자는 본사와 지역본부는 각 담당부서장, 교육원은 인재개발실장, 연구원은 기술연구실장, 지사는 지사장으로 하고 취급원은 분임취급자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.” 고 되어 있고, 「같은 규칙」 제17조(관리 사용책임) 제2항에 “분임 취급자는 소관 물품의 출납·보관 등의 사무처리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.” 고 되어 있다.

따라서 공사 예산으로 구입한 측량용품 등의 각종 자산은 그 재고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, 분실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.

[측량용품 관리 현황]

측량용품	수량	보관장소	보관상태	비 고
경계점표지	30~40여 박스	현관 계단 밑 창고	잠금 조치 없이 방치	
보조점 및 경계점	10여 박스			

그러나 위 현황과 같이 공사 예산으로 구입하여 배부한 경계점표지 등의 측량용품을 지사 사옥 외부 계단 밑 창고에 보관하면서 별도 잠금 조치 없이 방치하였고, 이에 따라 경계점표지 등의 측량용품이 분실하거나 훼손 될 우려가 있다.

조치할 사항

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지역본부장은 경계점표지 등을 보관하고 있는 ○○○지사 창고에 대해 잠금장치를 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,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측량용품 등의 공사 자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